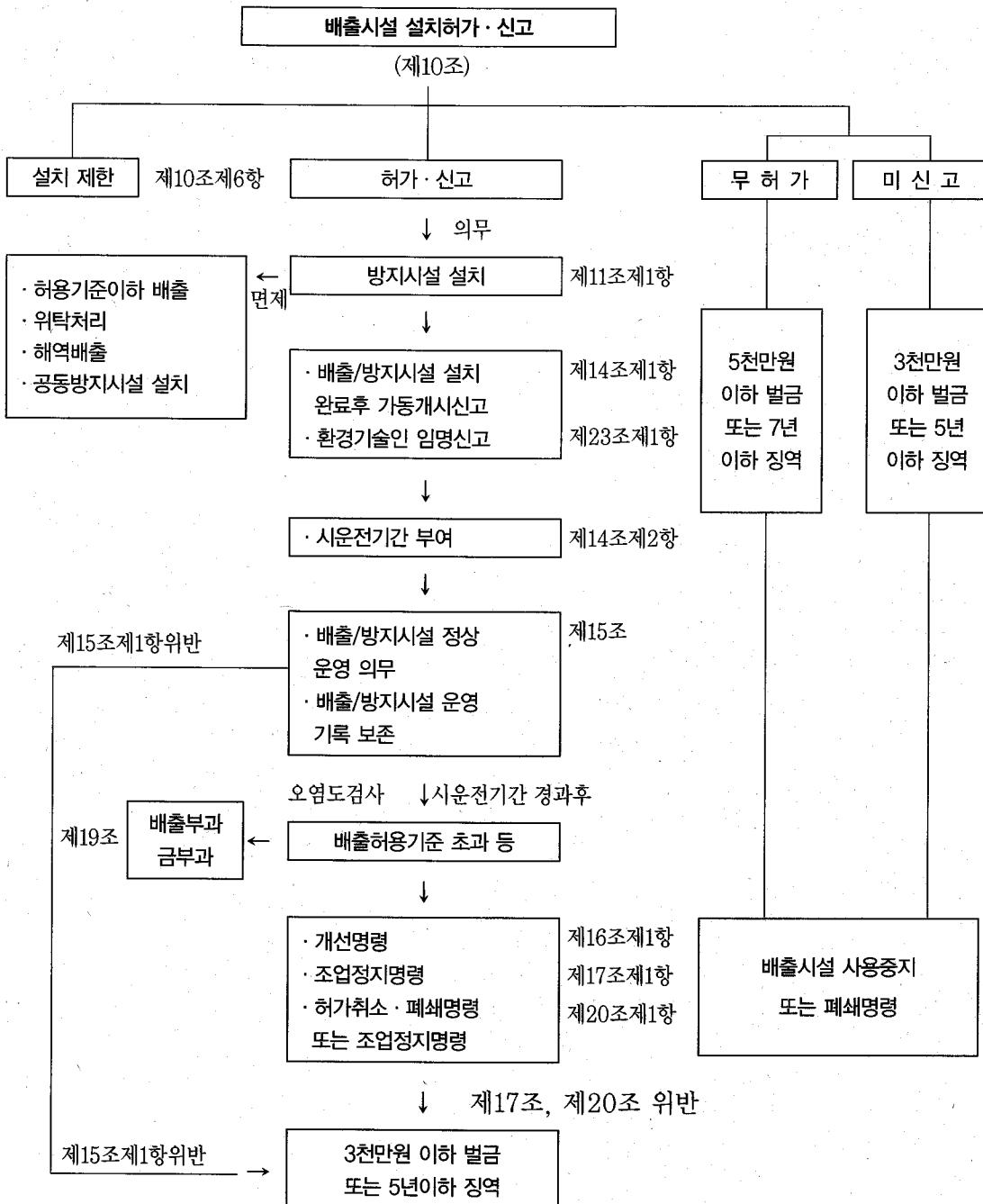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규제

1. 폐수의 배출규제



2-1.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

2-1-1. 수질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영 제2조(별표1))

2-1-2. 규제기준으로서의 배출허용기준(규칙 제8조)

■ 배출허용기준은 수역이용상황 및 오염원분포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설정

■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구 분	계	청 정	가	나
면 적(km^2)	99,262	44,969	41,434	12,859
구 성 비(%)	100	45.3	41.7	13.0

* 개정고시 : '99. 1. 8(2000. 1. 1부터 시행)

■ 배출허용기준

- BOD / COD / SS (규칙 별표5)

(단위 : mg/l)

구 분	1일 폐수배출량 $2,000\text{m}^3$ 이상			1일 폐수배출량 $2,000\text{m}^3$ 미만		
	BOD	COD	SS	BOD	COD	SS
청정지역	300이하	400이하	300이하	400이하	500이하	400이하
가지역	600이하	700이하	600이하	800이하	900이하	800이하
나지역	800이하	900이하	800이하	1200이하	1300이하	1200이하
특례지역	300이하	400이하	300이하	300이하	400이하	300이하

2-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법 제10조, 제30조의2)

2-2-1. 배출시설 및 기타수질오염원

- 배출시설 :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 허가대상 : 시행령 제2조제1항
 - 신고대상 : 시행령 제2조제2항
- 기타수질오염원 : 시행규칙 제5조의2 별표 3의2

2-2-2. 대상시설 구분

- 설치허가 및 신고

폐수배출시설		기타수질오염원
허가대상	신고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② 특별대책지역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③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④ 상수원 보호구역 및 그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⑤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 상수원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km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⑥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에서 새로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허가대상외의 배출시설 ② 허가대상중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배출시설 ③ 허가대상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하·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배출시설 ④ 환경친화기업 지정사업장중 허가대상의 ①⑥항에 해당되는 배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산물 양식시설 ② 골프장시설 - 면적 30만m²이상 또는 3홀 이상 ③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④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⑤ 사전처리 또는 X-Ray시설 ⑥ 금은 판매점의 세공시설 또는 안경점

- 대상시설의 적용(규칙 별표3)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 가.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1일 최대 폐수량이 0.01m³ 이상인 시설,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 시설을 배출시설로 한다.
- 나.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1일 최대 폐수량이 0.1m³ 이상인 시설을 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 (1) 1일 최대 폐수량이 20m³ 이하로서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 (2) 1일 최대 폐수량이 20m³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당해 시설에서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말한다)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3) 1일 최대 폐수량이 10m³이하로서 원폐수중 오염물질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항목에 한하고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동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허가·신고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다. 1일 최대 폐수량 산정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며, 위탁처리·재이용 또는 폐수배출공정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두부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두부제품을 식히거나 담근 폐수를 폐수량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변경허가	변경신고
<p>① 폐수배출량이 허가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은 100분의 30)이상 또는 1일 700m³이상 증가되는 경우</p> <p>②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설치신고를 한 시설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수배출량이 신고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방지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②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③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필한 배출시설중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④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⑤ 사업장 종별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 ⑥ 사업장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⑦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신고관청 및 배출시설이 동일하고, 입지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 경우

변경허가	변경신고
	<p>⑦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p> <p>⑧ 변경허가 대상시설중 공동방지시설 대표자 또는 폐수종 말처리시설 운영자와 협의된 경우</p> <p>⑨ 폐수를 위탁처리 하는 경우로서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p> <p>⑩ 기타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p>

2-2-3. 폐수배출시설 분류기준

가) 폐수배출시설의 정의

- “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에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폐수배출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2조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29종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 있고, 환경부령에서는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3에서 정하는 시설과 같다”로 규정하고 있음.

나) 폐수배출시설 분류기준

- 폐수배출시설은 공정단위별 시설을 전제로 시설물·기계·기구·기타 물체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분류
 - 오염물질 성상이 다양하거나 공정이 다양한 화학·1차금속 관련시설은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분류
 - 업소수가 적은 광업, 단순공정인 제지등의 시설은 소분류 기준으로 분류
 - 오염물질의 성상이 단순한 금속·기계제품 관련시설은 중분류 기준을 통합하여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분류가 곤란하거나 별도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분류

- 생산품, 오염물질의 성상이 다양한 화학관련 배출시설인 정유, 기초유기화학물, 기초무기화학물은 표준산업분류보다 더 세분하여 특성화
- 여러산업에 공통적으로 있을 수 있는 시설은 공통시설로 별도 분류하여 특성화
- 오염물질 배출공정이 유사한 시설은 통합하여 배출시설을 명명하거나 포함시설로, 오염물질 배출이 미미한 시설은 제외로 표기하고 산업과 연관된 각종 통계처리 및 지원이 가능토록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를 기재하였음.

※ 세분류를 기준으로 분류함에 따라 중분류(2자리 숫자), 소분류(3자리 숫자)는 뒤에 0을 붙여 4자리 숫자로 통일시키고 세세분류는 5자리 숫자로 표기하였으며, 표준산업분류에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더 세분류한 경우에는 동일 분류번호로 하였음.

자료제공 : 환경보전협회 환경연수부

다음호에 계속 ...